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20174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현

담당변호사 강창우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한별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1. 24.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560034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의료법인 C의료재단(주사무소 소재지 : 청주시 청원구 D) 사이에 2017. 5.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을 237,656,77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7,656,77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227,486,78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는 “237,656,77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고, 피고가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1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의 ‘2)’,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1. 3.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237,656,778원(= 원금 88,805,000원 + 2013. 6. 18.부터 2021. 11. 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8,851,778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237,656,77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7,656,7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1)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과 같은 물적담보이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설정 범위를 제외한 부분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해행위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수익권의 범위를 제외한 즉, 채무자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가치 상당액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한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C의료재단의 수익권 가치 상당액을 공제한 840,000,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7,019,060,500원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360,000,000원 - C의료재단이 가지는 수익권 가치 상당액 2,819,060,500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 3) 피고는 위 금액 중 737,734,394원을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 중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102,265,606원(사해행위의 성립범위 840,000,000원 -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737,734,3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이다.

- 1) C의료재단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즉, 원고를 비롯한 C의료재단의 일반채권자들은 원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7,019,060,500원)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3,360,000,000원)을 공제한

3,659,060,500원 상당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런데 C의료재단의 담보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인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료재단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채권자들은 C의료재단이 가지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C의료재단의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의료재단이 가지는 수익권 가치 상당은 2,819,060,500원에 불과하여 원래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일반채권자들이 가지는 공동담보액인 위 3,659,060,5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C의료재단의 일반채권자들은 채권만족에 있어서 기존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신탁계약은 그 전체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듯이 C의료재단이 가지는 수익권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2)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C의료재단이 가지는 수익권이라는 것은 사해행위인 신탁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즉,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담보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순히 말소하게 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을 함이 마땅하고, 그 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책임재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3,659,060,500원이 한도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659,060,500원에서 C의료재단이 담보신탁으로 가지는 수익권 가치 상당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C의료재단이 가지는 수익권이라는 것은 사해행위인 담보신탁에서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C의료재단의 일반채권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인하여 원래 3,659,060,500원 상당의 공동담보를 가졌었는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주장대로 위 수익권 가치 상당액을 다시 공제한다면, 일반채권자들은 840,000,000원(= 위 3,659,060,500원 - 수익권 가치 상당액 2,819,060,500원)의 공동담보에 대하여만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현, 판사 박성준, 판사 천지성

별지

목 록

1. 청주시 청원구 D 대 1,807m²
2. 청주시 청원구 S 대 46m²
3. 청주시 청원구 T 대 2,054m²
4. 청주시 청원구 U 대 10m²
5. 청주시 청원구 D, S, T, U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5층 의료시설

지1층 1,772.25m²

1층 741.98m²

2층 742.33m²

3층 750.38m²

4층 750.38m²

5층 636.37m². 끝.

